

폭염피해자 지원제도

● 지원 내용

폭염 대책기간(5.20.~9.30.) 중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「폭염」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「자연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

● 지원 대상

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
※ 국내 거주 외국인*도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

*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

● 지원 기준 및 범위

• 신청기간

폭염대책기간 종료일(9.30.)부터 10일 이내

•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

(사망자) 2천만원

(부상자) 1천만원(장애 1~7 등급), 5백만원(장애 8~14 등급)

※ 다른 법령으로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 안됨

(예: 공사장 작업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산재보험금 적용될 때 등)

● 폭염피해 판단 기준

의사의 진단을 통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

▷ 아래의 경우는 폭염피해 대상에서 제외

- 어린이, 노인 등 재난취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 시설 또는 보호자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
 - 기타 과도한 음주 등 개인의 명백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
- ※ 폭염 피해 확정이 어려운 경우 「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」를 개최하여 심의

● 문의처

각 시·군 폭염담당부서

● 재난지원금 신청방법

아래 ① 자연재난 피해신고서, ② 폭염피해 입증서류를 시·군·구 폭염피해 지원 담당부서에 제출해주세요.

① 자연재난 피해신고서

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「제7조 제1호서식」 <개정 2021. 11. 2.>

자연재난 피해신고서
※ 서식의 작성방법과 원고 전송서식(비밀번호,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록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록, 개인정보 처리 세부 세금·활용 등록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)
(제7조 제1항 제1항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1. 피해자 정보		
주소(시/읍/면)	소유자(실거주) [] 소유자(비거주) [] 세입자 [] 공동집회 세입자 [] (주거동 번호: -)	
성명(대표자)	명(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) [] 고등학교 명	
가족 수	명	
고등학생 수	명	
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	은행명: 계좌번호: 예금주: [] [] [] [] [] [] []	
이동전화 번호	[] [] [] [] [] [] []	
인터넷 번호	[] [] [] [] [] [] []	
우편번호	[] [] [] [] [] [] []	
2. 피해 내용	※ 피해 발생 위치 최초 피해발생 현장 피해 발생 위치	
피해사실명	[] [] [] [] [] []	
총면적(도유 + 임지)	[] [] [] [] [] []	
면허·허가·执照 번호	[] [] [] [] [] []	
피해물량	신고 [] [] [] [] [] []	
피해 구분	피해 원인 [] [] [] [] [] []	
인명피해 사망	[] [] [] [] [] []	
경상상황 여부	[] [] [] [] [] []	
국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여부	[] [] [] [] [] []	
피해 발생 위치	피해사실명 [] [] [] [] [] []	
총면적(도유 + 임지)	[] [] [] [] [] []	
면허·허가·执照 번호	[] [] [] [] [] []	
피해물량	신고 [] [] [] [] [] []	
피해 구분	피해 원인 [] [] [] [] [] []	
인명피해 사망	[] [] [] [] [] []	
경상상황 여부	[] [] [] [] [] []	
국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여부	[] [] [] [] [] []	

작성예

본 리플렛은 폭염에 대한 이해를 돋고,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피해자 지원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.

기후재난 대비 폭염 행동요령



● 처리절차



약 2주~한달 이상 정도 기간 소요

※ 단, 피해판단 검토에 따라 시간 지체 가능성 있음

Heat wave 폭염이란?

“아주 심하게 더운 더위”
“갑작스런 심한 더위”



폭염특보 발령기준

기상청에서는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폭염특보를 발령



일 최고체감온도가 33°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

일 최고체감온도가 35°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폭염특보는 날씨누리(기상청 홈페이지)에서 확인 가능

폭염에 장기간 노출될 때..

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, 신속히 조치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.

▶ 초기증상으로는 어지럼증, 발열, 구토, 근육경련 등이 있습니다.

온열질환의 종류 및 주요증상

- 열사병 (가장위험)**
- 중증신경 기능장애 (의식장애/혼수상태)
 -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($>40^{\circ}\text{C}$), 땀 날 수 있음
 - 심한두통, 오한, 빈맥, 빈 호흡, 저혈압
 - 메스꺼움, 현기증

- 열경련**
- 근육경련(종아리, 허벅지, 어깨 등)

- 열실신**
- 실신(일시적 의식소실)/어지러움증

폭염재난 위기경보 수준

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폭염특보 구역 178개 중 일부(10%이상), 지역적(40%이상), 광역적(60%이상), 전국적(80%이상) 기준에 따라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발령

관심 Blue

폭염 대책기간(5.20.~9.30.)

주의 Yellow

일부지역(특보구역의 10%이상)에서 일 최고기온 33°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경계 Orange

지역적(특보구역의 40%이상)으로 일 최고기온 33°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일부지역(특보구역의 10%이상)에서 일 최고기온 35°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심각 Red

지역적(특보구역의 40%이상)으로 일 최고기온 35°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일부지역(특보구역의 10%이상)에서 일 최고기온 38°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광역적(특보구역의 60%이상)으로 일 최고기온 35°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지역적(특보구역의 40%이상)에서 일 최고기온 38°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전국적(특보구역의 80%이상)으로 일 최고기온 35°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광역적(특보구역의 60%이상)에서 일 최고기온 38°C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(폭염 시 행동요령)



기상정보
수시로 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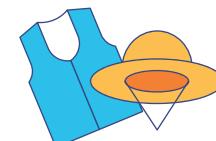
술, 카페인 음료보다
물 많이 마시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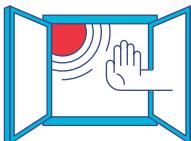
주변의 독거노인 등
폭염취약계층 안부 살피기



건설현장이나 농어촌 등
실외작업 시 자주 휴식 취하기



야외활동 자제, 꼭 해야할 경우
가벼운 옷차림, 넓은 모자



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
햇볕을 가리고
맞바람 불도록 환기하기



무더위쉼터

주로 노인시설, 마을회관, 주민센터, 아동센터 등
냉방비,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

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,
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 피하기

위치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, 안전디딤돌 앱,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